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28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이준석 · 천하람 · 이주영  
이인선 · 윤상현 · 최수진  
박준태 · 송언석 · 김승수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제4항 중 “제82조의8제2항”을 “제82조의8”로, “5년”을 “1년 이상 5년”으로, “또는 5천만원”을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7년”을 “1년 이상 7년”으로, “이상 5천만원”을 “이상 7천만원”으로 한다.

제25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 중 “제82조의8제2항을”을 “제82조의8을”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 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 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 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 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 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 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 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 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 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 ·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 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 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 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 다.</p>
<p>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p>	<p>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p>

③ (생략)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④ (생략)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3.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2조의8-----  
-----  
-----  
-----1년 이  
상 5년-----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1년 이상 7년  
-----  
-----이상 7천만원--  
-----.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 5. (생략)  
④ ~ ⑫ (생략)

4. 제82조의8을-----  
-----  
-----  
-----  
4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